2025년도「안전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중 관리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첨부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첨부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아래 참여 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결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년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23년 이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❶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❷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❸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❹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 당 1대**)

- 품목 지원 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참조[첨부2]

❍ **(지원절차)**

신청	→	우선선정 및 투자계획 확인	→	보조지원 대상결정	→	시설개선 및 보조금 요청	→	개선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70억원 내외

❍ **(신청기간)** ’25. 6. 30.(월) 15:00 ~ 7. 11.(금) 15:00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하고,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투자계획)	**(첨부4)**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⑦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⑧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⑨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⑩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⑪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⑫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해당시**

※ ④는「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⑧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 최저가격) 제출[첨부2 확인]

☞ ①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②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③**거래사실 확인서**를 모두 제출[첨부 4, 첨부 7 확인]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2) 안전보건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3)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4)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4)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5) 1) ~ 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u>4개월 이내</u>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u>온라인</u>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table>
<tr><th>구 분</th><th>비고</th></tr>
<tr><td>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td><td></td></tr>
<tr><td>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table>
<tr><th>오프라인 구매 시</th><th>온라인 구매 시</th></tr>
<tr><td>(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td><td>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td></tr>
</table></td><td></td></tr>
<tr><td>②-2 실거래 입증서류: 입금증빙서류</td><td></td></tr>
<tr><td>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td><td></td></tr>
<tr><td>④ 지급보증보험증권</td><td>(첨부5)</td></tr>
<tr><td>⑤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td><td>해당시(첨부6)</td></tr>
<tr><td>⑥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td><td>(첨부4)</td></tr>
<tr><td>⑦ 지게차 운전 자격(지게차 운전기능사 등) 서류</td><td>(첨부2)</td></tr>
<tr><td>⑧ 지게차 지자체 신고(취득세) 서류</td><td>(첨부2)</td></tr>
<tr><td>⑨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td><td>(첨부4)</td></tr>
<tr><td>⑩ 품목별「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td><td>(첨부4)</td></tr>
</table>

※ ③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⑤「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신청 시)

❍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해당 사업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지원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 규칙」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 [첨부7] 또는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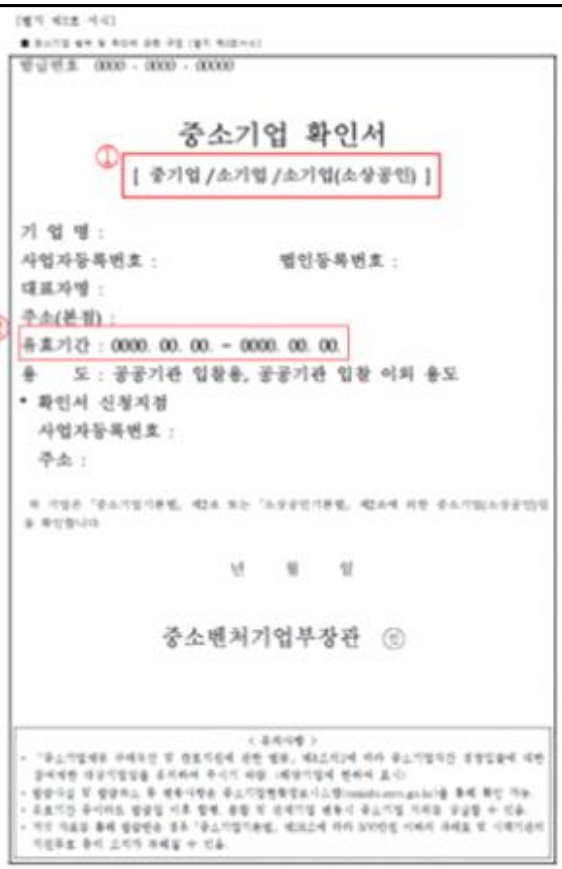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확인사항중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 2 지원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 **(지원목적) 차량계 스마트 안전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를 일체 지원하여, 지게차 도입 예정사업장의 근본적인 **끼임.부딪힘** 등을 예방

○ **(품목설명)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로서 충돌 위험 시 경보장치로 위험을 알리고, 무선통신으로 관리자 등에게 알려 조치할 수 있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1. (신청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를 도입하려는 사업장 -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23년 이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 중고품 지원불가 2. 전동지게차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에 관한 사항(제179조~제183조)에 따라야 함 3. 투자완료시, 다음 둘 중 하나의 관련 자격서류를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 조종 이수증 4. 투자완료시, 지게차 지자체 신고(취득세) 서류 제출 5. 실거래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기준가격 결정(5건 이상, 최저가격) -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스마트 충돌방지장치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분	최소 성능기준
충돌방지장치	■ 해당 구성(필수구성품)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4.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5. KC전파인증서 제출 [**카메라 및 감지장치**] 6.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최소 4대 이상 설치) 7.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8.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작업자(인체)를 감지 및 경보 기능을 갖출 것 9. KC전파인증서 제출
전동지게차	1.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 2. 전동식으로 타이어가 솔리드방식 - 적재하중이 3톤 미만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를 준수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그 이하의 높이에도 울리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좌석 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첨부 3

'25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 '24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table>
<tr><th>선 정 항 목</th><th>항목별 가중치</th><th>비고</th></tr>
<tr><td>■ 공통적용 항목</td><td>최대 70점</td><td></td></tr>
<tr><td>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td><td>5점</td><td>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td></tr>
<tr><td>②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장</td><td>10점</td><td></td></tr>
<tr><td>③ 사고사망 위험업종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사고사망만인율</th></tr>
<tr><th>10배수 이상</th><th>5~10배수 이내</th><th>2~5배수 이내</th><th>1~2배수 이내</th><th>0.5~1배수 이내</th></tr>
<tr><td>배점</td><td>15점</td><td>12점</td><td>9점</td><td>6점</td><td>3점</td></tr>
</table></td><td>최대 15점</td><td>'24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td></tr>
<tr><td>④ 최근 3년간('22~'24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table>
<tr><th>구분</th><th>3년</th><th>2년</th><th>1년</th></tr>
<tr><td>배점</td><td>10점</td><td>7점</td><td>4점</td></tr>
</table></td><td>최대 10점</td><td>'22~24년 공식통계 기준</td></tr>
<tr><td>⑤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table>
<tr><th>구분</th><th>고위험군</th><th>중위험군</th><th>저위험군</th></tr>
<tr><td>배점</td><td>10점</td><td>7점</td><td>4점</td></tr>
</table></td><td>최대 10점</td><td>※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활용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2미만)
- 중위험군(0.2~0.8미만)
- 고위험군(0.8~1.0)</td></tr>
<tr><td>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th></tr>
<tr><th>80% 이상</th><th>60% 이상 80% 미만</th><th>40% 이상 60% 미만</th><th>20% 이상 40% 미만</th><th>0% 초과 20% 미만</th></tr>
<tr><td>배점</td><td>10점</td><td>8점</td><td>6점</td><td>4점</td><td>2점</td></tr>
</table></td><td>최대 10점</td><td>※ 선정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td></tr>
<tr><td>⑦ 고용위기 지역('25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td><td>5점</td><td></td></tr>
<tr><td>⑧ 「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td><td>5점</td><td></td></tr>
<tr><td>■ 자율활동 우수항목</td><td>최대 30점</td><td></td></tr>
<tr><td>⑨ KOSHA-MS 인증 사업장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td><td>15점</td><td>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td></tr>
<tr><td>⑩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 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❿여름 휴가분산 우수기업</td><td>10점</td><td>각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10점으로 한정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td></tr>
<tr><td>⑪ 아래의 사업에 참여사업장
❶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업체
❷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❸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세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td><td>5점</td><td>'24,'25년도 사업
참여사업장</td></tr>
<tr><td>계</td><td>최대 100점</td><td></td></tr>
</table>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❷→❸→❹→❺→❻→❼→❽)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첨부 4 **서식 및 양식 모음**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산업	평가일시	25. 5. 30.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료 입고 인력 또는 운반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보완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적정 □보완	◦현상태 유지
절 단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LOTO 실시	□적정 ■보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적정 ■보완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산업용로봇를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용접하는 작업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LOTO 실시	□적정 ■보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배치 - 주기적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현상태 유지
적 재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작업계획서 작성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보완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작업계획서 작성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충돌방지장치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4.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카메라 및 감지장치]* *5.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최소 4대 이상 설치)* *6.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7.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작업자(인체)를 감지 및 경보 기능을 갖출 것*	*- 운전자 모니터에 충돌 위험현황 표시 및 경보 알림* *- wifi로 필수구성품 간 무선 연결됨* *- 방수방진 등급 IP55* *- 관리자가 태블릿을 통해 충돌 등 위험 실시간 영상 확인 가능 (지게차와 10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영상 확인 가능)* *- 카메라 및 감지장치 4대 설치* *- 최소 2m이상 거리에 근접하는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보*	☑
전동지게차	*1.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 *2. 전동식으로 타이어가 솔리드방식-적재하중이 3톤 미만*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를 준수*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그 이하의 높이에도 울리는 경우에 지원가능)*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좌석 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 타이어 솔리드 방식의 3톤 미만 전동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 등 지게차 관련 법령, 기준 준수* *- 포크상승높이 300mm이상 주행시 경보 알림* *- 전동지게차에 좌석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장지정치, 낙하방지밸브 구성 설치*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사업장 전경 및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자금신청)

사업장명	*00 가공산업*	작성일자	*2025. 5. 30.*

❑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거래사실 확인서

공급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공급받는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4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인)

공급받는자: (인)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1.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	**적정 여부**
충돌방지장치	*1. 운전자 모니터에는 충돌방지 현황(실시간 영상, 인체충돌 및 기타 위험 정보 등) 표시되고, 충돌위험 시 경보가 울릴 것* *2. 무선통신을 통해 기기(모니터, 카메라, 감지장치, 무선통신기, 그 밖의 기타 장치 등) 간 연결될 것* *3.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4. 별도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 인체충돌 등 위험상황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경보음 및 알림(충돌방향위치 표시)을 알 수 있을 것* *- 지게차와의 무선통신 반경은 최소 10m 이상일 것* *[카메라 및 감지장치]* *5. 전후방 사각지대 예방, 영상분석 시스템 기반 정확한 인체감지(최소 4대 이상 설치)* *6. 방수방진등급 IP55 이상일 것* *7. 최소 1m이상 거리에서 근접하는 작업자(인체)를 감지 및 경보 기능을 갖출 것*	*- 운전자 모니터에 충돌 위험현황 표시 및 경보 알림* *- wifi로 필수구성품 간 무선 연결됨* *- 방수방진 등급 IP55* *- 관리자가 태블릿을 통해 충돌 등 위험 실시간 영상 확인 가능* *(지게차와 10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영상 확인 가능)* *- 카메라 및 감지장치 4대 설치* *- 최소 2m이상 거리에 근접하는 작업자를 감지하고 경보*	☑
전동지게차	*1.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지게차(입식좌식)* *2. 전동식으로 타이어가 솔리드방식-적재하중이 3톤 미만*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를 준수*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지게차에 관한 사항 준수(제179조~제183조)* *5. 전동지게차 지원조건* *- 포크상승높이 300mm 이상으로 주행시 경보음이 울려야 함 (그 이하의 높이에도 울리는 경우에 지원가능)* *- 전동지게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함 : 좌석 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낙하방지밸브*	*- 타이어 솔리드 방식의 3톤 미만 전동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 등 지게차 관련 법령, 기준 준수* *- 포크상승높이 300mm이상 주행시 경보 알림* *- 전동지게차에 좌석안전띠,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장지정치, 낙하방지밸브 구성 설치*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이 **"최소성능기준" 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00 가공산업*	작성일자	*2025. 7. 10.*

❑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첨부 5 지급보증보험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5.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5.9.19. ~ '29.9.18.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redacted]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redacted]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redacted]	보험료	[redacted]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redacted] 계약기간 2025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redacted]

첨부 6 하자보증보험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5.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5.6.16. 경우
  '25.6.16. + 3년 2개월 => '25.6.16. ~ '28.8.15.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5.6.2. 발행 시 '25.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5.6.2. ~ '28.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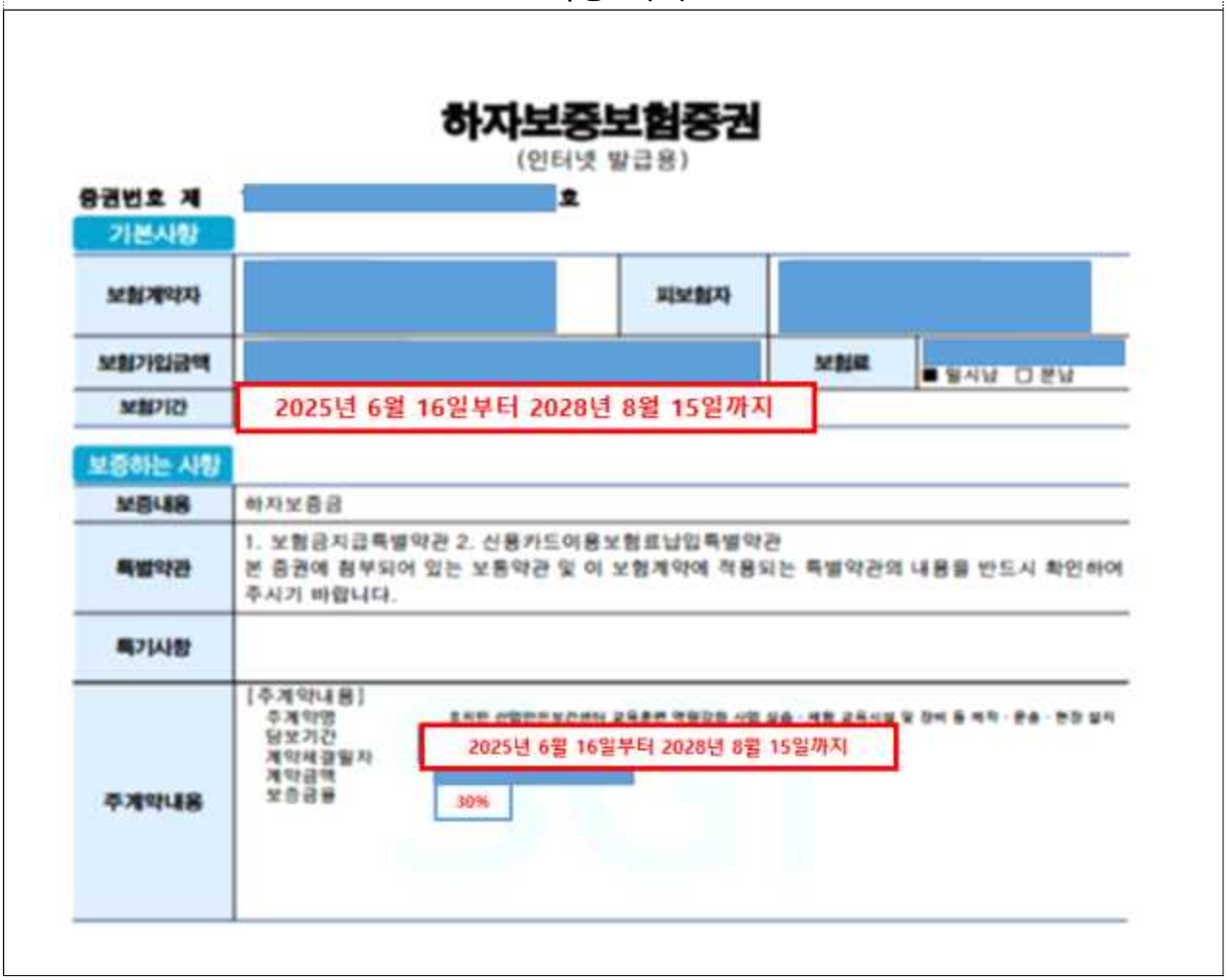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redacted] 호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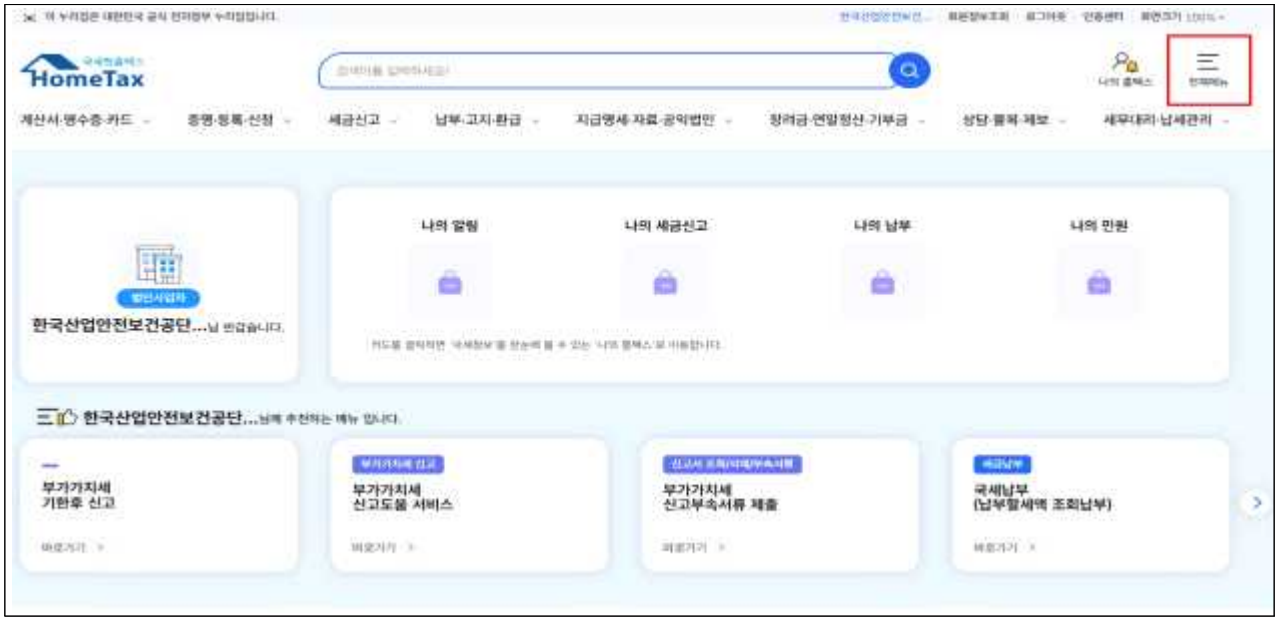
보험계약자	[redacted]	피보험자	[redacted]
보험가입금액	[redacted]	보험료	[redacted]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8월 15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8월 15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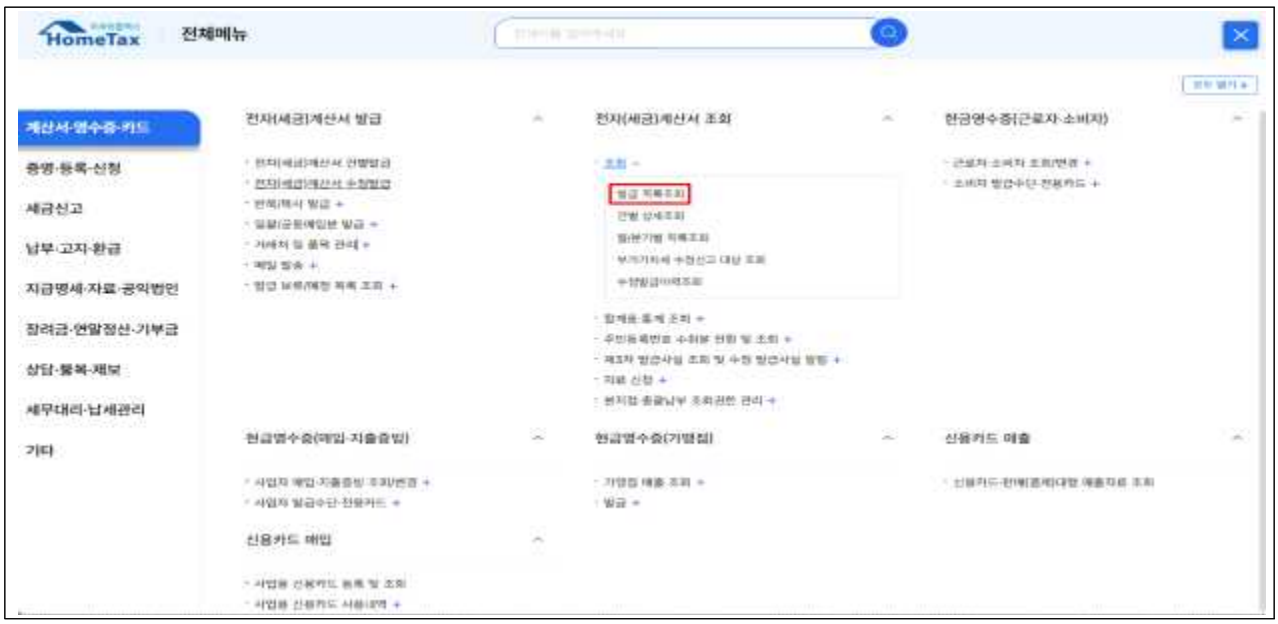
첨부 7 전자세금계산서 XML파일 다운로드 방법 안내

1. 국세청 홈텍스 (hometax.go.kr) 접속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전체메뉴 버튼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목록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목록 조회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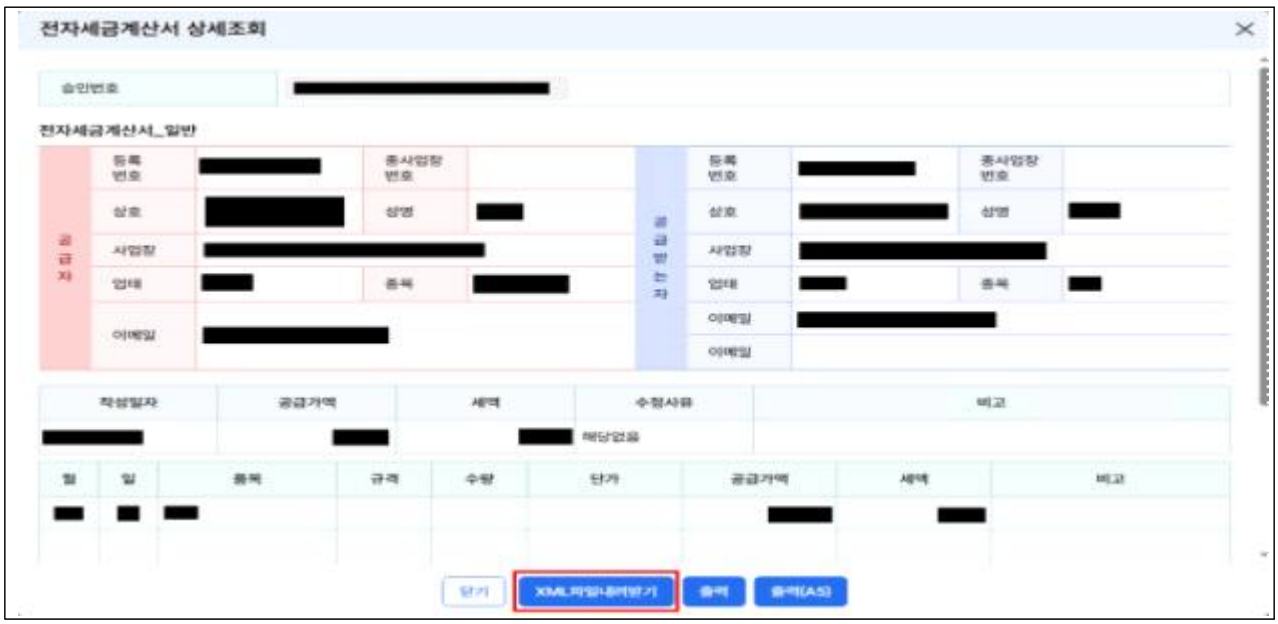
① 구분 - 매출 or 매입

② 조회기간 설정

③ 조회버튼 클릭

④ 조회목록 중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더블 클릭

4.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 XML파일 내려받기



○ XML 파일내려받기 클릭

첨부 8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6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2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3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0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9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4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4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6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7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22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3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4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